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2호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 고시안내 ②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5월 19일부터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 ·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 감리원	(1)책임감리원 (가)등급	50 [25]	○ 당해 감리용역의 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시>
		(-)	
(나)해당 분야 담당경력	(10)	(10)	○ 당해 감리용역의 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시>
		평가항목에 정해진 실제 설계관리 시공 감독 공사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진시공사비 점검 감사경력(단위 월)	
(다)참여 분야 직 무실적	(15)	(15)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시, 부표 2-2>
		구분	
(2)보조감리원 (가)등급	(15)	(15)	○ 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제2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나)해당 분야 담당경력	(6)	(6)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시>
		평가항목에 정해진 실제 설계관리 시공 감독 공사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진시공사비 점검 감사경력(단위 월)	
(3)비상주 감리원 (가)등급	[10]	(10)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0점으로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예시>
		구분	
(나)해당 분야 담당경력	(7)	(7)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예시>
		구분	
(2)보조감리원 (가)등급	(15)	(15)	○ 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제2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정·고시안(내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감리업체 실적	[10] (10)	<p>○ 최근 3년간 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전체 감리기간중 실제 공사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p> <p>- 당해 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점수</td> </tr> <tr> <td>300%이상</td> <td>10</td> </tr> <tr> <td>250%이상 300%미만</td> <td>9.2</td> </tr> <tr> <td>200%이상 250%미만</td> <td>8.4</td> </tr> <tr> <td>150%이상 200%미만</td> <td>7.6</td> </tr> <tr> <td>100%이상 150%미만</td> <td>6.8</td> </tr> <tr> <td>100%미만</td> <td>6</td> </tr> </table>	구분	점수	300%이상	10	250%이상 300%미만	9.2	200%이상 250%미만	8.4	150%이상 200%미만	7.6	100%이상 150%미만	6.8	100%미만	6
		구분	점수														
300%이상	10																
250%이상 300%미만	9.2																
200%이상 250%미만	8.4																
150%이상 200%미만	7.6																
100%이상 150%미만	6.8																
100%미만	6																
다. 전자용역의달성	(1) 감리업체	[5] (3)	<p>1)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설계감리 20% 적용, 계속공사인 직전공사의 감리용역 100% 적용</p> <p>2) 단독수행 100%, 공동도급은 용역참여 지분율 적용: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용역완료후 3년미만</td> <td>용역완료후 3년이상5년미만</td> <td>용역완료후 5년이상</td> </tr> <tr> <td>점수</td> <td>3</td> <td>2.4</td> <td>1.8</td> </tr> </table>	구분	용역완료후 3년미만	용역완료후 3년이상5년미만	용역완료후 5년이상	점수	3	2.4	1.8						
구분	용역완료후 3년미만	용역완료후 3년이상5년미만	용역완료후 5년이상														
점수	3	2.4	1.8														
	(2) 참여 감리원	(2)	<p>1)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설계감리 20% 적용</p> <p>○ 설계자(기술사·설계사·설계보조자) 또는 설계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p> <p>- 책임감리원: 100%, - 보조감리원: 50%</p> <p>2) 당해 공사가 계속공사인 직전감리인 경우: 100%</p> <p>- 책임감리원: 100%, - 보조감리원: 5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용역완료후 3년미만</td> <td>용역완료후 3년이상5년미만</td> <td>용역완료후 5년이상</td> </tr> <tr> <td>점수</td> <td>2</td> <td>1.6</td> <td>1.2</td> </tr> </table>	구분	용역완료후 3년미만	용역완료후 3년이상5년미만	용역완료후 5년이상	점수	2	1.6	1.2						
구분	용역완료후 3년미만	용역완료후 3년이상5년미만	용역완료후 5년이상														
점수	2	1.6	1.2														
라.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0] (7)	<p>1) 감리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p> <p>2)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p>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3] (1.5)	<p>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p>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나) 유동비율		[5] (1.5)	<p>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5점)</p> <p>○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100%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점수</td> <td>1.5</td> <td>1.25</td> <td>1.0</td> <td>0.75</td> <td>0.5</td> </tr> </table> <p>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1.5점)</p> <p>○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100%이상</td> <td>10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d>50%미만 25%이상</td> <td>25%미만</td> </tr> <tr> <td>점수</td> <td>1.5</td> <td>1.25</td> <td>1.0</td> <td>0.75</td> <td>0.5</td> </tr> </table>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1.5	1.25	1.0	0.75	0.5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1.5	1.25	1.0	0.75	0.5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1.5	1.25	1.0	0.75	0.5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1.5	1.25	1.0	0.75	0.5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 실적	[5] (2)	<p>1)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법 제 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p> <p>-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p> <p>-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0.7점</p> <p>-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p> <p>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2점을 초과할 경우 2점으로 인정)</p>																								
	(2) 투자 실적	(2)	<p>○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년도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3%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r> <tr> <td>점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able>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수	2	1.8	1.6	1.4	1.2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수	2	1.8	1.6	1.4	1.2																						
(3) 정보화 실적	(1)	<p>○ 정보화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년도 정보화투자액/전년도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p> <p>- 정보화실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위(1)의 개발실적을 3점으로 배분한다.</p>																									
바. 업무추진도	(1) 책임감리원	[10] (6)	<p>○ 책임감리원(6점)</p> <p>- 다른 공사현장에 중복배치(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를 포함)시: 0점</p> <p>※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 공사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예시></p>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구분	7년	책임관리	보조관리원	합수		
	(2)비상주감리원	(4)	○비상주의감리원(4점)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시 : 0점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예시)						
			구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합수	4	3	2	1	0	
사교체빈도	(1)감리업체	[5] (2,5)	○감리업체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 : <예시>						
			교체빈도(%)	10%미만	1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합수	책임	20	16	12	0	
			비상주	0.5	0.4	0.3	0		
	(2)참여감리원	(2,5)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책임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전일까지는 만점 처리한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
			합수	3	27	24	21	18	0
아작업계획및기법	(1)과업수행계획	[5] (3)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 <예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
			합수	2	18	16	14	12	0
	(2)작업기법	(2)	○당해 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 <예시>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
			합수	2	18	16	14	12	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가점	(1)상훈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감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장 이상의 표창 [감사장(예), 공로장(패)]은 제외를 받은 경우 2점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참여업체 또는 1인이 2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표창에 대하여만 가점 • 발주자·시·도지사 : 0.5점 • 장관·감사원장·국무총리 : 1점 • 대통령 및 훈·포장 : 1.5점
	(2)교육훈련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규칙 제6조의2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율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전기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기공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가점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5점

※ 비교 : 위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2-1]과 같다.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다. "해당분야 담당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근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 라. 참여분야직무 실적평가
 "참여분야직무실적"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서 별도 제시)에 대한

감독·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 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1) 감독: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2) 공사감리: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책임·보조·비상주감리원 등)로 기재된 실적

마. 참여감리원이 발주자·감독기관 또는 전기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전기공사·전력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참여분야직무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감리용역의 전력시설물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당해 감리용역비를 대비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3.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용역 및 계속공사인 직전공사의 감리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 감리업체와 참여감리원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 용역완료 후 기간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예시) 설계자 또는 설계감리자의 참여율×설계 또는 설계감리 비율×참여개월×용역완료 후 점수 ÷ 전체 설계용역 참여개월

나. 설계감리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기본설계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실시설계감리로 인정한다.

다. 감리업체는 전차용역의 수행정도에 따라 단독수행한 경우 100%,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다.

4.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다. 재정상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자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정보화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1)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자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을 말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전년도 전력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해당 감리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전년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다. 정보화실적 평가

(1) "정보화실적"이라 함은 감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제2호다목 및 제10호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전년도 정보화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해당 감리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전년도 정보화 투자실적 및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6. 업무중첩도는 참여감리원이 현재 수행중인 감리

용역중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3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text{○ 책임감리원} : \frac{\text{책임감리원 교체건수}}{\text{책임감리원 배치인원수}} \times 100$$

$$\text{○ 비상주감리원} : \frac{\frac{\text{비상주감리원 교체건수}}{5}}{\text{비상주감리원 배치인원수}} \times 100$$

8.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9. 가점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상훈의 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감리용역과 관련(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한다.
 - 나. 교육훈련의 가점은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 또는 규칙 제6조의2제1항 별표 1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전기관

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 훈련에 대하여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한다.

- 다.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 및 경감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감점 및 경감점수를 상계한 후 2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한다.
10. 발주자는 당해 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전자용역과의 관련, 재정상태건실도, 투자실적 및 정보화실적,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감리용역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표 2-2]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적무실적 평가 <예시>

당해 총 예정전 가공사비	등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00억원이상	특급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00억원미만	특급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이상
50억원이상	고급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50억원미만	특급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고급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이상
10억원이상	중급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0억원미만	특급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고급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당해 총 예정전 가공사비	등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				
		중급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10억원미만	초급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수		15	14	13	12	11

다음호에 계속됩니다.